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청년기본법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‘청년정책위원회’를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로 변경하고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청년정책위원회’를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‘심의’에서 ‘심의·조정’으로 개정(안 제9조)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(안 제9조)
- 청년의 구정 참여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, 구정에 반영된 정책

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-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‘청년참여기구’의 설치 근거 마련(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‘심의’에서 ‘심의·조정’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함.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‘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에서 ‘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체 활동 경험이 없는 개별 청년에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함.
- 아울러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, 안 제10조의3에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
- 청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, 당연히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청년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, 이는 청년정

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- 청년의 정책 참여는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기존 세대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,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